

信用狀 統一規則 第5次 改正(案)에 따른

問題點과 對應方案

崔 鳳 赫*

— < 目 次 > —

I. 序論

II. 信用狀 統一規則의 變遷

- | | |
|---------------|----------------|
| 1. 統一規則의 制定背景 | 2. 統一規則의 改正 沿革 |
| 3. 第5次 改正의 特徵 | |

III. 第5次 改正 信用狀 統一規則의 概要

- | | |
|-------------------|---------------------|
| 1. 信用狀 本質과 관련된 規則 | 2. 運送證券에 관한 條項 |
| 3. 保險證券 | 4. 商業送狀 및 用語에 대한 定義 |
| 5. 信用狀의 讓渡 | |

IV. 第5次 改正案의 問題點과 實務上의 有意事項

- | | |
|-------------------------------------|------------------|
| 1. 保證信用狀과 관련된 問題 | 2. EDI 書類에 관한 內容 |
| 3. 他國에 所在한 本支店은 각기 다른 銀行으로 간주한다는 條項 | |
| 4. 統一規則의 翻譯 | 5. 支給約定에 관한 問題 |
| 6. 條件變更書의 受諾 | 7. 買入의 定義 |
| 9. 指定銀行의 指定 | 10. 書類의 審查基準 |
| 11. 運送證券에 관한 事項 | 12. 商業送狀에 관한 問題 |
| 13. 有效日字 및 場所 | 14. 信用狀의 讓渡 |

V. 結論

* 中央大學校 貿易學科 講師, 仲裁人,

I. 序 論

信用狀 統一規則(이하 統一規則이라 한다.)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용장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될 수 있는 통일된 규칙이 필요하다는 실무계의 요청에 따라 1933년 ICC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統一規則은 마지막 결정과정에서 유럽국가의 관행은 대폭 수용되었으나 統一規則 制定을 주도해 온 미국, 영국 등의 주장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세계경제를 주도하던 미국, 영국 등은 자국의 관행이 받아드려지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동 규칙의 채택을 미루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大国들이 統一規則의 채택을 기피하게 됨에 따라 統一規則은 당초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되어 처음부터 개정의 필요성을 안고 출발하게 되었다. 그후 ICC는 세계 각국이 채택하는 실질적인 統一規則이 될 수 있도록 각국의 관습을 대폭 수용하고 또한 운송수단의 발달과 국제상관습의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네차례에 걸쳐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統一規則은 민간단체인 ICC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강제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나 세계의 모든 은행들이 信用狀去來에 있어서는 이를 채택함에 따라 범세계적인 규칙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統一規則은 商慣習의 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1983년에 제4차의 개정이 있었다. 그후 국제거래에서 保證信用狀의 사용증가, 1990년 Incoterms의 개정 등으로 統一規則의 개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ICC에서는 개정 실무위원회가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개정작업에 착수한 결과 1992년 5월 5일 統一規則 개정 초안이 Document No. 470-37/72으로 발표되었다. 이 초안은 1992년 11월 23일 ICC의 이사회 개최시에 확정될 예정이며, 1993년 4월 정식으로 책자로 발간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UCP 500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統一規則 실무 개정위원회가 각국의 관행과 판례 및 질의사항들을 감안하여 統一規則 改正案을 제정하였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의 신용장 관행이 전적으로

받아드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상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紛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第5次 改正 統一規則案의 변경 내용과 이에 따른 問題點을 상세히 규명하므로써 貿易業界가 새로운 統一規則에 손쉽게 적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II. 信用狀 統一規則의 變遷

1. 統一規則의 制定 背景

17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사용되던 舊式信用狀¹⁾은 유럽에서 19세기 후반까지 이용되었으나 이는 일부 재력있는 상인들이 이용하였을 뿐 상거래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운송수단의 발달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은행이 발행하는 現代信用狀²⁾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경제의 主導權을 휘得意한 미국 상인들이 상거래에서 換危險을 회피할 목적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現代信用狀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국제거래에서 現代信用狀이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20년에 들어서면서 국제물가가 하락하자 미국의 상인들이 수입상품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輕減시킬 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代金支給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 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상들이 신용장에 의한 受益者의 請求權을 부인하는 사례가 늘면서 信用狀去來에 따른 紛爭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³⁾. 이러한 紛爭의 급증은 미국 상인들이 신용장 실무를 제대로 熟知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信用狀去來가 暴增하게 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내에서 신용장제도에 대한 연구

1) Open credit 또는 buyer's credit이라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A.G. Davis, The Law Relating to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3rd. ed., 1963, pp.2-11 참조

2) Banker's credit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H. Finkelstien pp. 4, 13, 14, 18, 25-27 參照

3) 小峯登, 1974年 信用狀 統一規則 (上), 外國爲替貿易研究會, 1977, p.17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신용장 제도의 統一運動이 일어나게 되었다. 미국의 統一運動은 1922년 「商業信用狀會議樣式」이라는 標準樣式이 제정되었으며 1926년에는 「뉴욕 은행 상업신용장회의에 의해 채택된 규정」이라는 제목의 美國信用狀規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⁴⁾

信用狀 去來에 있어서 유럽제국도 미국과 비슷한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1923년-1930 사이에 독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신용장 統一運動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즉 1923년 독일 및 그리스, 1924년 프랑스와 놀웨이, 1925년 이탈리아, 스웨덴 및 체코슬로바키아, 1926년 아르헨티나, 1928년 덴마크, 1930년 네델란드 등에서 신용장 표준양식 및 규정을 발간하게 되었다⁵⁾.

이와 같이 각국은 紛爭을 예방하기 위하여 信用狀 規約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각국의 국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일 뿐 국제적으로 통일된 規範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간의 紛爭解決에는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따라서 信用狀去來에 참여하는 은행은 물론 무역관계자들도 신용장에 관한 國際的 統一規則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각국의 요망에 따라 ICC에서는 1926년 統一規則의 제정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하여 1929년 「商業信用狀에 관한 統一規則」草案(ICC Brochure No. 74)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ICC에서는 이 초안을 1930년 4월부터 시행하도록 각국에 권고하였으나 독일의 ICC 국내위원회가 統一規則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제출함에 따라 재심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1933년에 이르러 ICC에서는 새로운 草案을 마련하여 ICC의 제7차 회의에 上程하여 ICC Brochure No. 82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라는 명칭으로 채택하였다. 이 統一規則은 유럽의 統一規則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독일, 프랑스 등의 신용장 관행은 대폭 수용하였으나 미국, 영국 등의 관행은 제대로 반영되지

4) 上揭書 p.18

5) G. Wiele, Das Dokumenten-Akkreditiv ubd der Anglo-Amerikanisch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Hamburg, 1957, p.22 and Ward, Harfield 4th ed. p.175

못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자국의 관행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統一規則은 영연방 국가 및 일본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었다⁶⁾. 또한 統一規則의 제정에 앞장섰던 미국도 자국의 신용장 관습을 참조하도록 하는 참조규정을 統一規則에 첨부하는 조건으로 채택⁷⁾함에 따라 실질적이고도 범세계적인 統一規則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⁸⁾.

2. 統一規則의 改正沿革

1) 1952년 第1次 改正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국제상거래에서 신용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ICC에서는 統一規則이 전문가 뿐 아니라 비전문가에게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統一規則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설감하게 되었다. 또한 신용장 사용의 급증과 상관습의 변화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統一規則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ICC 국내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ICC의 은행, 실무 기술위원회에서는 統一規則의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⁹⁾, 특히 미국의 국내위원회에서는 당시의 신용장 관행과 자국의 참조규정 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統一規則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은행기술 실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감안하여 새로운 統一規則을 마련한 ICC에서는 1951년 리스본의 제13차 회의에서 ICC Brochure No. 151로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統一規則에도 여전히 영국의 신용장 관행이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연방국가들은 이의 채택을 거부하였다. 또한 1952년부터 개정 統一規則을 시험 운용해 본 결과 많은 問題點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信用狀 統一規則의 적용에 관한 註釋(commentary)을 발표할 것을 결정하고 작업에 착수한 결과 1957년에 「Practical

6) E. P. Ellinger, "The Uniform Customs - their nature and the 1983 revision, ",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1984, p. 578

7) Wilbert Ward & Henry Haefield, Bank Credits and Acceptances 4th ed. Ronald Press, 1958, p.145

8) 小峯登, 前掲書, pp. 17 - 19

9) 上掲書, p. 20

Application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이라는 Commentary를 제정하였으나 발표는 후일로 미루게 되었다¹⁰⁾.

2) 1963년 第2次 改正

1957년에 작성된 Commentary를 발표하기에 앞서 同 Commentary가 1951년에 개정된 統一規則을 또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統一規則과 Commentary간에 중대한 해석상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됨에 따라 Commentary를 발표하기 보다는 統一規則을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統一規則의 채택을 미루어 오던 영국이 자국의 관행을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와 함께 改正案을 제시해 옴에 따라 영국의 관행과 統一規則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信用狀 統一規則의 2차 개정작업은 여러가지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62년 ICC Brochure No. 222로 발표되었으며, 1963년 4월 멕시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統一規則의 채택국과 자국의 관행을 고집하던 영연방간의 대립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으며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統一規則이 탄생하게 되었다.

3) 1975년 第3次 改正

제2차 개정이후 國際運送分野에 있어서 컨테이너에 의한 수송이라는 새로운 운송방법이 개발되어 一貫運送이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複合運送證券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東西間 경제협력의 진전 등으로 서유럽과 동유럽간에 國境貿易도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¹¹⁾. 이러한 상관습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ICC에서는 1967년 정형무역계약조건인 Incoterms에 「國境引導條件」과 「關稅支給搬入條件」이 추가하여 Incoterms 1967을 발표하였다. 한편 統一規則을 운용함에 있어서 當事者間의 해석상의 차이로 인하여 統一規則上의 文句나 표현방법에 관하여 다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각

10) 小峯登, 1962年 信用狀 統一規則 (上), 外國為替貿易研究會, 1963, PP. 27-31

11) Bernard S. Whebl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71", Revision, Cornell Int'l Law Journal Vol.4, No.2, 1971 ,p.99

국의 ICC 국내위원회 또는 은행 등으로 부터 ICC의 有權解釋을 구하는 질문이 답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운송수단 및 상관습의 발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信用狀去來 當事者간의 오해나 紛爭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統一規則을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¹²⁾.

이에 따라 ICC는 統一規則 개정 작업부를 설치하고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ICC 會員國이 아닌 社會主義國家의 의견까지 수렴하였으며 複合運送證券에 관하여는 ICC가 제정한 「複合運送에 관한 統一規則」 (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을 참조하여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취소불능 신용장의 償還請求不能성을 명시하므로써 환어음법과의 조화를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¹³⁾. 이 試案은 1974년 10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ICC Publication No. 290으로 발표되어 1975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4) 1984년 第4次 改正

국제거래가 다양하고 복잡해 지면서 신용장은 단순한 상품거래의 支給手段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金融商品의 거래에 까지 이용되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따라서 貨換信用狀 去來에 주로援用되던 統一規則이 保證信用狀에 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統一規則이 3차에 걸쳐 개정된 이후 「UN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Incoterms 1980」 등 무역관계의 국제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信用狀去來에서의 必須書類인 保險證券이 1981년 개정¹⁴⁾되어 무역거래에 사용

12) B.S. Whebl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74 Revision)", Journal of Business Law, 1975, March, p. 281

13) E.P. Ellinger op. cit. p.581

14) 英國의 保險者協會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에서는 1981년 종래에 사용하던 保

되기 시작함에 따라 새로운 보험조건에 約款 및 변경된 증권양식 등을 수용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또한 統一規則上에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受理可能한 書類인지의 여부로 은행과 受益者간에 견해차이를 보이던 複合運送證券에 관한 내용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ICC는 1979년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여러번의 수정작업을 펼친 결과 1983년 6월 ICC Publication No. 400으로 확정하였으며 UNCITRAL의 認准을 거쳐 1984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¹⁵⁾.

5) 第5次 改正

統一規則이 각국의 ICC 국내위원회, 은행 등으로 부터 접수된 의견, 질의, 응답 등을 근간으로 하고, 이에 추가하여 최근의 무역관계의 국제규정, 상관습의 변화 등을 수용하였다고는 하지만 제4차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統一規則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當事者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ICC의 은행기술 실무위원회에서는 년2회 정도의 회합을 통하여 각국의 은행, 무역업자, 보험업자, 운송인 등으로 부터 내도하는 문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책자로 정리하여 信用狀 關係當事者의 이해를 돋도록 노력을 해왔다¹⁶⁾.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은행실무 기술위원회의 견해일뿐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紛爭解決에는 참고사항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또한 은행실무 기술위원회에서는 새로이 개발되거나 발전되어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최신의 통신, 운송, 무역절차 등을 統一規則에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 오던 중 국제무역거래관습을 주도하고 있는 Incoterms가 1990년에 개정되어 「Incoterms 1990」로 발표되었다. 특히 「Incoterms 1990」에는 EDI Message를 正規書類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어떤 형태로 던지 統一規則에도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險證券을 폐지하고 새로운 證券을 制定, 公表하였다.

15) 韓柱燮, 最新 信用狀論, 東星社, 1984, pp. 34-35

16) ICC, Banking Commission Decisions(1975-1979), ICC, Opinions(1980-1981)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84-1986

1990년 ICC는 統一規則 개정작업부를 설치하고, 그동안 은행실무 기술위원회에 내도한 질의내용을 토대로 하여 각국의 ICC 국내위원회로 부터 개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여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1991년 ICC Document No. 470-37/5, 470-37/37 등으로 개정초안을 마련하여 각국의 ICC 국내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1992년 Document No. 470-37/72로 최종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다시 각국의 국내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이사회에 인준¹⁷⁾을 받아 1994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3. 第5次 改正의 特徵

第5次 改正 統一規則案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에 마련된 第5次 改正 統一規則(案)은 종전의 조항을 삭제하거나 통합하여 전체적인 조항 수는 축소되었으나 내용은 종전보다 더 세밀하게 명시되었다. 따라서 統一規則의 내용은 오히려 증가되어 해석상의 모호한 점이나 當事者間에의 紛爭 豫防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UCP 400의 40조와 42조가 삭제되고 13개 조항이 타 조항에 부분적으로 흡수되거나 축소되었으며, 運送書類에 관한 조항이 대폭 보완되어 종전의 統一規則에 비하여 8개 조항이 줄어든 4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統一規則 개정작업부에서는 運送書類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Sub-working group)를 별도로 두어 UCP 400의 海上運送證券, 기타 運送證券 및 郵便受取證 등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던 運送書類에 관한 내용의 보완을 Sub-Working Group¹⁸⁾에 위임하였다. 그 결과 債船貨證券에 관한 규정(제 24조), 航空運送證券에 관한 규정(제 26조), 철도, 도로 및 내수로 運送證券에 관한 규정(제 27조)이 각각 신설되었으며, 特使配達人에 의한 運送書類 조항을 신설하여 郵便受取證에 관한 조항인 28

17) 1991년 11월 23일 認准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結果에 대한 通報가 없었다.

18) 이 위원회의 위원은 Charles del Busto, Stefan Draszczyk, Boris Kozolchyk, Salvatore Maccarone, Terrence J. Mitchell, Ferdinand Muller, Gunner J. F. Siebke, Dan Taylor, Joachim G. Weichbrodt, Bernard Wheble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 b항에 삽입시켰다. 또한 종래의 26조 c항에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던 運送周旋人 船貨證券에 대한 규정을 독립시킨 후 내용을 크게 보완하였다. 海上運送證券과 複合運送證券 만을 중시하여 이에 대한 내용만을 상술하던 종래의 統一規則과는 달리, 이번 개정에서는 모든 운송방법을 염두에 두고 이에 의해 발급되는 運送書類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Incoterms 1990에 명시되어 있는 Sea Waybill에 대한 내용은 삽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Sea Waybill이 실무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될 뿐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¹⁹⁾.

셋째, 은행기술 실무위원회에서는 統一規則 개정작업부가 반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EDI를 統一規則에 수용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EDI-UCP Working Party의 해체를 결의하였다. 이는 EDI messages가 안고있는 법적인 문제와 실무적용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은행기술 실무위원회가 書類信用狀(paper credit)과 無書類信用狀(paperless credit) 양쪽에 적용될 수 있는 統一規則의 제정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무역거래 간소화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전통적인 書類를 컴퓨터에 의한 전송방식인 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전환시키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에서는 EDI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²⁰⁾.

넷째, 이번 개정을 위하여 개정작업부는 은행기술 실무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Opinions of the Banking Commission(ICC Publication No. 434, 469)의 내용과 Case Study (ICC Publication No. 459)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²¹⁾. 또한 각국의 국내위원회가 제시한 특정 의견이나 제안이 너무 교육적이거나 실무적이어서 統一規則 條項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19) ICC, Document No. 470-37/72 dated May 5, 1992

20) ICC, Document No. 470-37/5 dated October 5, 1990

21) ICC, document No. 470-37/5 dated October 5, 1990

III. 第5次 改正 信用狀 統一規則의 概要

1. 信用狀 本質과 관련된 規則

1) 信用狀의 適用範圍

信用狀 統一規則 400에는 統一規則이 保證信用狀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조항이 保證信用狀에도 적용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當事者間에 의견을 달리함에 따라 혼란이 야기되었다²²⁾. 따라서 각국의 국내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을 기회로 保證信用狀에도 統一規則을 적용하는가의 여부를 분명하게 명시해 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개정위원회(working group)에서는 국내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信用狀 當事者가 특정 신용장에 統一規則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할 경우 신용장 조항에 그러한 사실을 명시하면 충분하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의 배제 조항이 없는 경우 統一規則의 각 조항은 保證信用狀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2) 支給約定과 관련된 내용

① 開設銀行 자신을 위한 支給約定 -- 신용장은 지금까지 開設申請人の 의뢰와 동시에 의해서 開設銀行이 受益者에게 지급을 약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²³⁾ 이번 개정에서는 開設銀行이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에서 " -- where a bank acting at the request and on the instructions of a customer or its own behalf, -- "라는 구절을 UCP 500 제2조에 삽입하므로써 開設銀行도 자신을 위해 지급을 약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는 貨換信用狀 去來의 경우에는 開設銀行이 스스로 신용장을 개설할 이유는 없겠으나²⁴⁾, 保證信用狀은 그 특

22) 우리나라에서는 保證信用狀 대신에 주로 保證狀(letter of guarantee)이 이용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23) UCP 400, Article 2, -- acting at the request and on the instructions of a customer --

24) 銀行이 商品을 輸入, 販賣하기 위하여 信用狀을 開設할 理由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성상 開設銀行이 자신을 위하여 지급을 약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보여진다.

② 銀行 支店에 대한 定義 -- UCP 500의 초안에는 은행의 지점이나 본점이 타국에 소재할 경우 각기 다른 은행으로 간주한다는 조항(branches of a bank in different countries are considered separate banks)이 신설되었다. 그동안 取消可能信用狀의 취소, 조건변경 등과 관련하여 본·지점에서 행한 취소 또는 조건변경의 효력발생시점이 문제가 되었다. 즉 本,支店을 동일한 은행으로 간주할 경우, 本,支店에서 행한 취소, 변경이 通知銀行인 支店에 도착되는 것과 상관없이 취소 또는 변경을 행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타 은행으로 간주할 경우 通知銀行 또는 指定銀行에 도착된 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⁵⁾.

또한 本,支店 어느 일방이 破産을 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²⁶⁾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 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商法에서는 本,支店을 동일한 은행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법과는 배치되는 개념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점과 본점을 동일한 은행으로 간주하지 않는 관행을 현실화 한 것이다.

③ 獨立.抽象性에 대한 정의-- UCP 400의 제3조에서는 신용장의 獨立.抽象性을 간단히 서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신용장이 무엇으로부터 독립되고 抽象化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명시(Consequently, the undertaking of a bank to pay, accept Draft(s) or negotiate or to fulfil any other obligation under the credit, is not subject to claims or defence by the Applicant resulting from his relationships with the Issuing Bank or the Beneficiary)하고 있다. 즉 은행이 행한 환어음의 지급, 인수, 매입 또는 기타의 의무이행에 대한 확약은 開設申

25) 이에 관하여는 崔鳳赫,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支給履行의 本質에 관한 研究, 中央大學 博士學位 請求論文, 1990, pp.73-74 參照.

26) 法律上 支店은 獨自的인 權利主體가 아니므로 支店의 經營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權利와 義務는 本店이 부담하게 된다. ICC, opinions(1980-1981)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on Queries relating to UCP R.67

請人과 受益者 또는 開設申請人과 開設銀行과의 관계를 이유로 開設申請人으로 부터 클레임 또는 지급저자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²⁷⁾.

④ 既開設信用狀(similar or pre-advised credit)을 이용한 支給約定 -- UCP 400의 13조에 명시된 既開設信用狀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구제조항²⁸⁾을 삭제하므로써 既開設信用狀을 이용하여 신용장을 개설, 통지, 확인하는 것을 규제(-- banks should discourage any attempt; to issue, advise or confirm a credit similar to --) 하였다 (제5조 a항). 이로써 既開設信用狀의 사용을 제한하는 종래의 규정²⁹⁾을 더욱 강화시켰다.

⑤ 通知銀行의 책임범위 확대 -- 通知銀行은 신용장의 文面上의 진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확대하였다 (UCP 500 제7조). 만약 通知銀行이 신용장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通知銀行은 신용장 발송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If the Adcicing Bank cannot establish such apparent authenticity it must inform, without delay, the bank from which it received --). 또한 受益者에게 진위성을 확인하지 못한채 통지할 경우 通知銀行은 受益者에게 신용장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 (--it must inform the beneficiary that --)하여야 한다³⁰⁾.

通知銀行이 신용장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³¹⁾ 반드시 開設銀行이나 受益者에게 진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므로써 通知銀行의 의무를 확

27) 信用狀의 獨立抽象性은 어음의 無因性을援用한理論이다. 獨立抽象性과 어음의 無因性에관하여는 崔鳳赫 前揭 博士學位 請求論文 pp.27-28 參照

28) 즉 이미 開設된 信用狀을 參照하도록 하는 方法으로 信用狀이 開設된 경우, 별도의 明示가 없으면 條件變更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事項(,it shall be understood that the similar credit will not include any such amendment(s)--)을 削除하였다.

29) UCP 400, Article 13

30) 우리나라에서는 開設銀行과 通知銀行간에 換去來 契約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信用狀上에 스템프로 "We, the XXX bank, have no correspondent with this L/C issuing bank. Accordingly we transmit this L/C to the beneficiary without any authentication and responsibility on our part."이라는 문구를 날인한 후 通知하는 것이慣行이다.

31) 通知銀行이 貞偽性을 確認할 수 없는 경우는 開設銀行과 通知銀行間에 換去來 契約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開設銀行이 일방적으로 信用狀의 通知를 부탁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受益者は 同 信用狀의 貞偽性을 확인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대하고 또한 偽造 또는 變造된 신용장의 사용을 억제하므로써 건전한 信用狀去來 風土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⑥ 取消可能與否의 表示 -- 統一規則은 제정 당시부터, 개설되는 신용장이 取消可能인지 取消不能인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取消可能 信用狀으로 간주하여 왔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는 동안 각국의 국내위원회에서 는 취소가능여부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取消不能 信用狀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그러한 의견이 반영되는 듯하였으나 최종 순간에 取消可能으로 결정된 예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取消不能信用狀으로 간주하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이를 取消可能으로 간주하려는 주된 이유는 만약 取消不能 信用狀이 착오로 잘못 개설될 경우 신용장이 取消不能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착오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開設銀行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은행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염려한 은행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번번이 개정되지 못하였다.

⑦ 取消不能 信用狀의 支給確約 -- 이번 개정에서는 取消不能 信用狀에서 지급을 확약함에 있어서 指定銀行 또는 開設銀行에 書類가 제시될 때에 지급확약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명시(UCP 500 제9조 a항, -- the stipulated documents are presented to the Nominated Bank or to the Issuing Bank ---)하였다. 종래에는 書類가 어느 은행에 제시되어야 지급이 확약되는지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開設銀行에 제시될 경우 지급이 확약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³²⁾, 이 조항의 삽입으로 紛爭의 소지를 줄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開設銀行 또는 確認銀行이 지급 (-- to pay--), 연지급 (--to pay---), 인수(to be responsible -- to be drawn on the applicant for the credit --), 매입(--or on any other drawee stipulated in the credit other than the issuing bank itself --) 할 경우와 타행이 지급, 연지급(payment will be made), 인수, 매입 할 경우를 함께 서술하

32) 이에 관하여는 崔鳳赫, 前揭 博士學位 請求論文, PP. 22-24 參照

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開設銀行 또는 確認銀行이 지급화약할 경우와 他行이 지급화약할 경우를 독립시켜 구분하므로써 開設銀行의 지급화약의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이번 개정에서 引受信用狀의 경우 開設申請人이 환어음을 인수토록 指定되는 경우³³⁾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買入信用狀의 경우 期限附 환어음에 대한 내용과 支給人에 대한 명시규정도 삭제³⁴⁾하였다.

⑧ 確認銀行의 支給確約 -- 確認信用狀의 경우에도 지급화약은 開設銀行의 지급화약과 동일하며 確認銀行은 환어음 또는 書類가 유효기간내에 確認銀行에 제시될 경우(-- to the Confirming Bank on or before the expiry date ---)에 한하여 지급을 확약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으나 買入信用狀의 경우 買入銀行으로 指定된 은행이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確認銀行은 開設銀行과는 달리 환어음을 매입(-- to negotiate, without recourse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確認銀行이 매입하는 경우³⁵⁾ 신용장의 효력이 確認銀行에서 종료되는지 아니면 開設銀行에서 종료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⑨ 信用狀의 條件變更書의 效力 -- 신용장 조건변경에 대한 효력 발생시기(The Issuing Bank shall be irrevocably bound by an amendment(s) issued by it from the time of its issuance.)가 開設銀行에 대해서는 開設銀行이 신용장 조건변경서를 발행하는 시점³⁶⁾ 되며 受益者에 대해서는 受益者가 受諾意思를 통지하는 시점인 것으로 명

33) 上揭論文 p.25 參照. 開設銀行이 직접 引受하는 信用狀을 straight acceptance credit라 한다.

34) 支給人에 대한 明示規定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買入信用狀의 경우 支給人을 開設銀行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開設銀行은 支給義務者이기 때문에 開設銀行이 매입하면 支給義務者가 자신의 채무를 割引하는 것이 된다.

이에 관해서는 崔鳳赫, 前揭 博士學位 請求論文, pp. 114 - 115 參照

35) Negotiation is not, of course, payment in due course but is a purchase of the draft, R.M. Goode, "Reflection on Letters of Credits(1)", Jopurnal of Business law, 1980, 7, p.291 note 1.

36) UCP 500, Article No. 9, e, ii)

시하였다³⁷⁾.

또한 조건변경서를 受益者가 수락한다는 의사를 은행에 제시할 때까지는 원신용장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구절(-- original credit will remain in force for the Beneficiary until the Beneficiary communicates his acceptance of the amendment to the bank --)을 신설하므로써 受益者가 조건변경의 수락을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3) 書類審査와 관련된 用語

① 指定銀行 -- 신용장의 사용방법을 명시함에 있어서 종래에는 開設銀行에 직접書類를 제시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指定銀行에 제시하도록 指定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開設銀行이 자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指定³⁸⁾하는 형태(--it is available only with the Issuing bank --)를 신설하였다³⁹⁾. 그리고 受益者가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명시된 書類를 開設銀行 또는 指定銀行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조항(제10조 b항 i)도 신설하였다.

따라서 開設銀行이나 指定銀行 이외의 은행에 書類를 제시하는 행위는 단순히 仲介銀行⁴⁰⁾에 書類를 제시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仲介銀行이 開設銀行이나 指定銀行에 書類를 재차 제시하여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효기간의 종료일도 受益者가 仲介銀行에 書類를 제시하는 시점이 아니라 仲介銀行이 開設銀行에 書類를 제시하는 시점이 된다⁴¹⁾.

② 買入의 定義 -- 매입(negotiation)이란 용어는 買入銀行이 書類 또는 환어음의

37) UCP 500, Article No. 9, e, iii)

38) UCP 500, Article No.13, 指定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崔鳳赫, “信用狀 去來上 銀行의 指定과 解除에 관한 研究”, 清州大學校 經營學論集 第8輯, 1986, 1, 參照

39) 이는 保證信用狀의 경우 開設銀行이 직접 支給하도록 지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40) 仲介銀行에 관하여는 崔鳳赫, 前揭 博士學位 請求論文 pp. 104 - 105 參照

41) 仲介銀行에서 開設銀行으로 서류를 발송하는 도중에 발생한 紛失이나 기타의 사고에 대해서는 仲介銀行 또는 受益者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舟木凌, “書類の 發送中 紛失に ついて”, 國際金融 575號, 1976, pp.21-22

對價를 受益者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는 사실(Negotiation means the giving of value for Draft(s) and/or documents by negotiating bank.)과 書類만을 심사하는 것은 매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指定銀行이 指定을 수락한다는 사실을 受益者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指定銀行이 書類를 受理하거나, 심사 또는 발송한다 하더라도 지급, 인수, 매입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조항(제 10조 c항)이 신설되었다.

③ 郵便確認書(Mail confirmation) -- 신용장이 電信으로 개설될 경우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電信通知書는 유효한 신용장증서(-- the teletransmission will be deemed to be the operative credit instrument or the operative amendment,--)로 간주된다 (제11조 a항). 따라서 郵便確認狀 (mail confirmation)이 발송되어서는 안된다. 종래에는 電信通知書⁴²⁾(cable advice)가 내도된 경우 受益者는 동 통지서가 유효한 신용장인지 또는 郵便信用狀이 내도될 것인지는 신용장 본문상에 그러한 명시가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만 알 수 있었다.

開設銀行만이 신용장을 전신으로 예비통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통지를 행한 開設銀行은 예비통지와 동일한 내용의 신용장을 자체없이 개설해야 한다(An issuing bank having given such pre-advice shall be irrevocably committed to issue or amend the credit, in terms not inconsistent with the pre-advice, without delay.)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은 開設銀行이 신용장 개설을 예비통지한 후, 어떤 이유로 추후에 신용장을 개설을 하지 않을 경우 受益者는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으로 부터 受益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보여진다.

4) 書類審查基準

① 書類審查基準 -- 書類를 심사하는 기준이 신설되었다(제 13조 a항). 書類가 신용장과 文面上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운송인, 보험회사 또는 실무가의 기준이 아닌 은행의 국제표준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즉, 統一規則을 기준으로

42) 信用狀이 開設되 사실만을 알리는 단순한 통지는 short cable이라고 하며, 信用狀內容의 전부를 電信으로 통지하는 것은 full cable이라고 한다. 그러나 兩者를 구별하는 방법은 따로 없다.

하여야 하며, 또한 信用狀上에 명시되지 않은 書類는 은행이 심사하지 않고⁴³⁾ 이를 受益者에게 되돌려 주거나 또는 他 銀行⁴⁴⁾으로 발송한다.

종래에는 書類의 심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였다⁴⁵⁾. 따라서 開設銀行, 確認銀行은 書類 受取日로부터 7영업일이내 (--not to exceed seven working days--)에 심사⁴⁶⁾하여야 하며 書類가 2통 이상인 경우 심사할 書類를 수취한 날로 부터 동 기간이 기산된다.

또한 제시되어야 할 書類를 명시하지 않은채 특정 조건을 명시한 경우⁴⁷⁾ 은행은 그러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한다는 조항도 신설되었다⁴⁸⁾.

② 追認의 決定 -- 受益者가 제시한 書類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할 경우 開設銀行은 당연히 이를 거절하게 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불일치를 허용하여 書類를 인수하는 것이 關係當事者를 위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書類의 不一致를 追認(ratify)⁴⁹⁾하기 위하여 開設申請人과 상의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開設銀行 單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조항(-- it may in its sole judgment approach the Applicant for a waiver --)이 신설되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書類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할 경우 開設銀行은 반드시 開設申請人과 상의하여야 한다는 見解⁵⁰⁾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當事者간에 다툼이 있었다⁵¹⁾.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開設銀行은 독자적인

43) UCP 500, Article No. 13, a, (Documents not stipulated in the credit will not be examined by banks.)

44) 구체적으로 어떤 銀行이라는 明示는 없으나 書類發送銀行을 지칭한다.

45) 應分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는 意見이 4차 개정때까지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기간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Chales del Busto, "Operational Rules for Letters of Credit: Effect of New Uniform Customs Code Practical Rules", UCCJL Vol. 17, 1985, p. 291

46) 이 규정은 信用狀을 通知하는 通知銀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7) 예를 들면 'Shipment from London to Hong Kong'; "Terms CIF hong Kong"; "Price USD 10.00 per Kgs." 등과 같은 조건을 명시하였으나 구체적인 提示書類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를 立證할 수 없기 때문이다.

48) 예를 들어 船積이 완료된 후 受益者は 運送書類의 寫本 1部를 즉시 登記郵便으로 開設申請人에게 發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郵便受取證을 제시도록 하는 규정을 누락시킨 경우 이를 무시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9) 追認이라 함은 어떤 法律行爲의 결점을 補充하여 완전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50) 小峯登, 前揭書, pp.396-397

판단으로 불일치 書類의 거절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제 14조 c항)52).

③ 書類의 原本 및 發行者

書類의 발행자의 자격을 “저명한”, “일류의” 등으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만약 그러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 書類가 신용장 조건을 만족시키되 受益者 이외의 자가 발행한 것(bank will accept ----as presented, ---and not to have been issued by the Beneficiary)이면 충분하도록 하는 규정(제 20조 a항)이 신설되었다53).

또한 서명이 요구되는 書類의 경우에 있어서 서명이라 함은 肉筆, 패시밀리, 穿孔, 스템프, Symbol 또는 다른 기계적이나 電子的인 방법으로 진위성을 나타내는 방식을(Such a document may be signed by handwriting or in facsimile, a perforation, stamp, symbol, or any other mechanical or electronic method of authentication) 지칭한다. 이와 같이 종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던 서명에 대한 개념이 새로 도입되어(제 20조 b항) 국가마다 상이한 서명방식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54).

5) 費用負擔 및 補償

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동 은행에게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지시한 자(A party instructing another party)가 수수료, 비용, 경비, 요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제 18조). 또한 비록 信用狀上에 그러한 비용이 제3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경우55)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지시자가 진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제18조 c항). 그러나 이 조항은 신용장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credit is not drawn down--) 또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사용되지 못한 경우(-- or is not drawn down sufficiently to enable recovery of any charges --)에만 적용된다(제 18조 c항 ii).

51) Maurice Megrah, "Risk Aspects of the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Arizona Law Review Vol. 24, 1982, p. 256

52) 일단 追認을 한 瑕疵事項에 대해서는 禁反言의 원칙에 따라 후일에 이를 번복할 수 없다.

53) 수의자가 발행하는 서류가 제시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특히 first class, well known, qualified, local 등의 發行者 資格을 명시해서는 안된다.

54) 특히 東洋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장도 署名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었다.

55) "All banking charges outside of importing country are for account of beneficiary"와 같이 受益者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규정이 명시된 信用狀도 많이 이용된다.

償還費用(reimbursement claims)부담에 관한 조항(제19조 e항)도 신설되었다. 즉 償還費用은 開設銀行이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 當事者가 부담하기로 규정된 경우⁵⁶⁾에는 원 신용장에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償還費用을 開設銀行 이외의 자가 부담하기로 규정된 경우 지금, 인수, 買入銀行은 신용장이 사용될 때 동 금액을 공제(shall be collected from paying, accepting or negotiating bank when the credit is not drawn under,--)할 수 있다. 그러나 償還費用을 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용장이 충분히 사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을 지시한 자⁵⁷⁾가 이를 부담(--reimbursement charges remain the obligation of the instructing party.)하여야 한다.

2. 運送證券에 관한 條項

UCP 400에서는 運送證券과 관련된 조항으로는 제25조와 제26조를 두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다양한 運送方式에 부응할 수 있도록 7가지의 運送方式으로 세분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海上運送⁵⁸⁾에 관해서는 제23조, 傳船運送에 관해서는 제24조, 複合運送에 관해서는 제25조, 항공운송에 관해서는 제26조,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에 관해서는 제27조, 特使配達人 및 郵便船積에 관해서는 제28조, 運送周旋人の 운송에 관해서는 제29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종전에는 발행자를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한정시켰으나⁵⁹⁾ 이번 개정에서는 운송의 형태에 따라 船長(master) 또는 그 대리인, 船主(owner)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는 것도 유효한 것으로 하여 발행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⁶⁰⁾. 船貨證券이 발행될 경우 運送人, 船長, 船主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진본임을 확인(authenticated

56) 受益者が 償還費用을 부담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57) 開設銀行을 지칭하지만 최종적으로는 開設申請人이 부담하게 된다.

58) UCP 400에서는 海上運送에 marine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번 改正에서는 marine과 ocean이라는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59) UCP 400, 第25條 a項 과 第26條 b項

60) 傳船運送의 경우에는 送荷人이 運送人을 겸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船長 또는 代理人이 證券을 발행할 수 밖에 없다. 또한 航空運送, 特使配達 등의 경우에도 적절한 資格을 가진자가 발행할 수 있도록 運送人の 범위를 확대하였다.

by---)하여야 하며 서명자 또는 진본 확인자는 그 자격 (the capacity) 즉, 船長, 船主, 運送人, 대리인 등의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換積⁶¹⁾에 대한 용어 정의도 각종 運送方式에 일맞도록 각 조문에서 각기 따로 설명하고 있으며, 海上運送을 제외한 모든 運送方式에 있어서 換積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證券에 의해 전 運送期間이 카바되는 경우 換積될 것이라는 조항이 있는 證券은 受理가 가능하도록(-- bank will accept a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which indicates that transhipment may or will take place , provided that the entire voy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transport document.) 규정하고 있다. 海上運送의 경우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하나의 證券에 의해 전 運送期間이 카바되는 경우에 한하여 換積이 금지되어 있더라도 換積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조항이 있는 證券은 受理가 가능하다.

1) 海洋船貨證券

UCP 400의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던 運送書類 일반에 관한 조항을 부두간 海上運送 (--covering a port-to-port shipemnt,--)과 관련된 船貨證券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시켰다(제23조).

船積船貨證券 양식을 사용할 경우⁶²⁾ 발행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었으며, 受取船貨證券의 경우 船積日字附記(on board notation)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⁶³⁾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受取船貨證券上에 선박명이 [예정된(intended)]이란 용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선적일자 부기란에 선적된 선박명도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⁶⁴⁾. 또한 수취장소가 선적항과 다르거나 또는 최종목적지가 양육항과 다르게 명시되어

61) 換積이란 원래 transfer from one ship to another라는 海上運送區間에 있어서 하나의 船舶에서 다른 船舶에로의 移轉을 의미한다.

小峯登,舟木凌, 1974年 信用狀 統一規則(下), 外國爲替貿易研究會, 1979, p. 170

62) 이 경우 船積되었다는 사실과 船積된 船舶名이 명시된 樣式을 이용하여야 한다.

63) 信用狀上에 期間經過 船貨證券(stale B/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期間經過라는 용어가 반드시 船積日로 부터 21일이 경과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64) 船舶名 다음에 substitute라는 용어가 붙어 있는 경우 정확한 船舶名을 記載하였다고 간주하

있는 경우, 또는 [예정된]이란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선적항이나 양육항이 신용장에 약정된 대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受理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略式船貨證券(short form/blank back bill of lading) 또는 별도의 운송조건을 참조하도록 규정된 船貨證券의 경우⁶⁵⁾ 은행은 그러한 별도의 조건내용을 심사하지 않는다 ((Bank will not examine the contents of such terms and conditions)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2) 傳船運送 船貨證券

UCP 400에서는 傳船船貨證券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傳船運送의 경우 信用狀上에 별도의 조항을 두어야 하였으며 또한 신용장에 관한 統一規則의 일반원칙이 傳船運送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못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점차 늘어나는 傳船運送추세⁶⁶⁾에 맞추어 傳船船貨證券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두게 되었다⁶⁷⁾.(제 24조)

傳船運送은 특성상 船貨證券상에 運送人名이 표시되지 않으며 船長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船貨證券을受理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海上運送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船積船貨證券을受理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용장에서 傳船契約書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은행은 그러한 계약서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으며(bank will not examine such charter party contract--) 아무런 책임없이 同 證券을 전달한다.

3) 複合運送證券

종래의 제25조 내용 가운데 海上運送을 포함한 複合運送(multi-modal transport)에 관련된 부분만을 독립시켰으며 제25조의 전체적인 내용도 UCP 400과 대동소이하게 구성

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證券上에 나타난 船舶에 積載할려고 하였으나 어떤 이유(shut out등의 이유)로 인하여 船舶에 積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船舶에 積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5) 船貨證券의 發給이 電算化되어 가면서 運送弱冠을 인쇄하지 않은 船貨證券의 發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66) 原油, 鐵礦石, 穀物 등과 같은 大量貨物 또는 特殊貨物의 경우 傳船運送에 의해 주로 運送되므로 統一規則上에 傳船運送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게 되었다.

67) 傳船運送 船貨證券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統一規則을 改正할 때 마다 제기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한 사실이 있다. 小峯登, 舟木凌, 前掲書, PP.98-101

되었다(제25조). 複合運送과 관련된 용어는 multi-modal transport로 통일하여 이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다⁶⁸⁾.

複合運送證券은 船主, 船長, 運送人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한 증권이면受理가 가능하며 선적, 수취, 수탁된 사실이 동 증권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증권발행일자를 선적, 수취 또는 수탁일자로 간주한다. 信用狀上에 船積運送證券(on board trans- port document)의 제시가 요구될 경우 선적이 이루어 졌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선적일자를 附記하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4) 航空運送證券

航空運送證券⁶⁹⁾에 관한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신설되었으며(제26조) 航空運送人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고 출발 공항명과 도착 공항명이 명시되어 있는 航空運送證券(air transport document)은受理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⁰⁾. 信用狀上에 실제의 운항번호(flight number)와 일자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운항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하며, 운항번호 및 일자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증권발행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신용장에서 證券 全通을 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送荷人 또는 荷主用 航空運送證券⁷¹⁾ 원본(the original for consignor/shipper)이 제시되면 충분하다.

5) 도로, 철도, 내수로 運送證券

이번 개정에서 신설된 조항(제27조)으로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수취하였음을 나타내는 스템프를 날인하거나(reception stamp), 수취사실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거나(other indication of receipt), 서명 또는 진본임을 확인하고 운송인명이 기재된 도로, 철도, 내수로 運送證券은受理가 가능하다⁷²⁾.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의 특성상 선적 또는 적

68) 종래에는 複合運送을 Combined transprt라고 하였으나 이번 改正에서는 Multimodal transport로 변경하였다.

69) 航空運送證券은 일반적으로 Airway bill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번 改正에서는 Air Transport docu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70) House Airway bill도受理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명시가 없다.

House Ariway bill에 관해서는 小峯登, 舟木凌, 前掲書, pp.270-279 參照

71) 上掲書, pp.265-268

72) Railway B/L, Trucking company B/L, Inland Waterway B/L에 관해서는 上掲書, pp.263

재된 후에 발행되는 船續運送證券은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며, 화물의 수취일자 또는 증권 발행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증권상에 발행통수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In the absence of any indication on the document as to the numbers issued, ---) 은행은 제시된 書類를 발행된 全通으로 간주하고 이를 受理한다⁷³⁾.

6) 特使配達人 또는 郵便船積

郵便船積은 종전의 규정과 같으나 特使配達人에 의한 運送方式이라는 새로 개념이 도입되었다. 特使配達人(courier)에 의한 선적도 일반적인 상거래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때 발행되는 證券도 은행을 통하여 受理가 가능하도록 特使配達人 및 急送配達(expedited delivery)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⁷⁴⁾. 特使配達人과 관련된 사항은 郵便船積에 관한 사항과 함께 제28조에 명시하였다. 은행은 特使配達人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진본임을 확인한 運送證券은 受理한다. 이 방식에 의한 발송은 配達人이 送荷人으로 부터 화물을 직접 수취하기 때문에 集配(pick up) 또는 수취를 나타내는 證券이 발행되며 은행은 그러한 書類를 受理한다.

7) 運送周旋人에 의한 船續

종전에는 複合運送의 경우 FIATA B/L⁷⁵⁾은 受理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그러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信用狀上에서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한 運送證券은 受理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運送周旋人이 指定運送人 또는 그 대리인의 자격으로(--- by freight forwarder as a named carrier or agent) 運送證券을 발행할 경우⁷⁶⁾에는 은행은 이를 受理한다(제29조).

- 264 參照

73) 鐵道, 道路, 內水路 運送證券은 權利證券이므로 대부분 複本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항상 發行全通을 요구하여야 한다.

74) 小量貨物 또는 見本品 등이 주로 Courier 또는 Expedited delivery에 의해 발송되며 商品去來에서는 그다지 이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統一規則에 이러한 運送方式도 受容해야 하는가는 의문이다.

75)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reight Forwarder에 가입한 運送周旋人이 발행한 船貨證券.

76) 이때에는 運送周旋人的 자격이 아니라 運送人的 자격으로 證券을 발행하므로 문제가 없다.

8) 受理可能 無故障 運送證券의 範圍

信用狀上에 受理를 하지 않는 無故障 證券의 범위를 명백히 명시되지 않거나 또는 은행이 證券上의 어떤 조항이 상품이나 포장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명백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運送證券上에 상품 또는 포장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附記條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運送證券의 受理를 거절하지는 않는다는 조항(Banks will not reject the trnasport documents solely because of the inclusion of these clause(s) or notation(s))이 신설되었다⁷⁷⁾.

종전에는 運送證券에 그러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 모두 受理를 거절하였으나(Banks will refuse transport documents bearing such clauses or notations ---) 이번 개정에서는 信用狀上에 어떤 附記條項이 受理불가능⁷⁸⁾이며, 또 船貨證券상의 어떤 표현이 상품의 포장이나 외관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조항인가를 은행이 입증할 수 없는 경우 受理를 거절하지 않도록 하므로써 無故障 船貨證券의 범위⁷⁹⁾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상품이나 포장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附記條項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23,24,25,26,27,28조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無故障 船貨證券(Bank will regard a requirement in a credit for a transport document to bear the clauses "cleans on board" as complied with if such transport document meets the requirement of this article and articles 23, 24, 25, 26, 27, 28.)으로 간주된다.

3. 保險證券

1) 保險證券의 제시 통수

77) 代船條項 또는 Shut out clause가 포함되어 있는 船貨證券의 경우 故障船貨證券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78) 예를 들면 "ship not responsible for breakage"등과 같은 일반적인 免責條項이 포함된 경우에는 受理가 가능하다.

79) Clean B/L에 대한 學者들의 견해는 조금씩 다르다.

A.G. Davis, "The Law Relating to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3rd ed. p.64,
伊澤孝平, 商業信用狀論, 有斐閣, 1958, pp.453-454

保險證券이 複本으로 발행될 경우 발행된 원본 全通(full set)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제33조 a항). 保險證券도 有價證券의 일종이기 때문에 複本으로 발행될 경우 全通을 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

2) 保險證明書 또는 豫定保險에 의한 確認書

信用狀上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 하더라도 은행은 보험회사가 사전에 서명하고 (presigned) 피보험자가 확인서명(countersigned)을 한 예정보험에 의한 保險證明書⁸⁰⁾ (insurance certificate) 또는 확인서(declaration under an open cover)의 경우에는 이를受理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무역거래의 실무상 保險證券과 함께 保險證明書의 발급도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保險證明書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제33조 c항)으로 그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⁸¹⁾.

3) 附保金額

最低附保 金額은 CIF 또는 CIP금액을 書類上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CIF 또는 CIP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인수, 매입 금액의 110% 또는 送狀금액의 110% 중 큰 금액⁸²⁾을 最低附保金額(bank will accept as such minimum amount 110% of the amount for which payment, acceptance or negotiation is requested under the credit, or 110%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voice, whichever is the greater.)으로 한다.

4. 商業送狀 및 用語에 대한 定義

80) 保險證券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保險證明書로 保險證券을 대신 할 수는 없다. 小峯登, 舟木凌, 前掲書, p. 294

81) 保險證券이나 保險證明書 가운데 어떤 것을 제공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Insurance policy or Insurance certificate acceptable”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82) 支給, 引受, 買入金額이 送狀金額을 上廻하는 경우란 매우 드물다.

1) 商業送狀

종래에는 商業送狀의 發行인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내용에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信用狀上에 명시된 受益者가 開設申請人 名義로 商業送狀을 發行하도록(-- must appear to be issued by the beneficiary --, must be made out in the name of the applicant --)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商業送狀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⁸³⁾하므로써(-- need not be signed) 信用狀 去來에 있어서 書類없는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터전을 뒀다. 또한 컴퓨터나 기타의 방법으로 送狀을 發行하는 방법⁸⁴⁾이 일반화되어 감에 따라 그러한 방법에 의해 送狀이 발급된 후 서명을 생략하도록 하므로써 書類 簡素化의 여지도 마련하였다.

2) 金額 및 數量의 許容限度

信用狀上에 分割 船積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 受益者は 신용장 금액보다 5% 부족한 금액의 어음을 發行(또는 就決)할 수 있다는 조항⁸⁵⁾(-- a tolerance of 5% less in the amount of the drawing will be permissible --)이 신설되었다(제37조 c항). 종래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신용장 실무상, 신용장 금액과 送狀上의 單價와 수량을 곱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약간의 금액을 할인⁸⁶⁾하여 어음을 發行하는 편법을 사용하였다.

이 조항은 about, circa, approximately와 같은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when expressions referred to in a. above are used in the credit.) 또한 수량이 전량 선적되고 單價도 할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

83) 小峯登,舟木凌, 前掲書, p.374 에서는 商業送狀은 發行者가 書名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4) ICC Incoterms 1990에서 명시한 賣渡人の 義務를 보면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or its equivalent electronic message ---"로 규정하고 있어 賣渡人은 상품의 제공과 함께 商業送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 메시지를 제공할 義務를 진다.

85) 5%의 short drawing을 허용한 것은 Incoterms의 more or less clause 조항을 採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Incoterms 1980 이전의 경우에는 3%의 short drawing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86) 商業送狀상에 "special discount" 또는 "les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單價와 金額을 調整하여 送狀金額을 算出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3) 有效日字 및 장소

有效日字에 대한 용어정의가 신설되었다(제40조). 즉 有效日字(expiry date)라 함은 書類를 은행에 제시하는 최종일자를 의미한다고 정의(Ab expiry date stipulated for payment, acceptance or negotiation will be construed to express 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of documents.)하고 있으며⁸⁷⁾, 有效日字를 표시할 때에는 自由買入 信用狀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書類提示場所⁸⁸⁾(place of presentation)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支給,引受信用狀의 경우 指定銀行이 指定되지 않으면 어느 장소에서 有效日字가 종료되느냐가 불분명하였다⁸⁹⁾. 그러나 이 규정이 신설되므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信用狀上에 運送書類의 제시를 書類 발급후 일정기간내에 행하도록 규정⁹⁰⁾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용장에서 運送書類의 寫本만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船續日字

船續日字와 관련되어 사용되던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용어가 사용된 경우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If they are used banks will disregard them). 그러나 船積日字와 관련하여 "on or about"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指定日字 前後 각 5일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日字에 대한 用語 定義

87) 따라서 有效日字의 最終日字가 銀行의 休務日인 경우 자동적으로 다음 營業日로 연장된다.

88) 信用狀 金額을 지급할 指定銀行名을 지칭한다.

89) 指定銀行名이 명시되지 않으면 다음의 원칙이 적용된다.

첫째, 買入信用狀의 경우 自由買入信用狀으로 간주하여 受益者가 서류를 제시하는 銀行에서 종료된다.

둘째, 支給,引受, 買入指定 信用狀의 경우 開設銀行에서 終了된다.

90) 書類 發行日字로 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提示토록 지정된 경우 유효일자의 自動 延長原則과는 달리 최종일자가 銀行의 公休日이라 하더라도 최초의 營業日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to", "until", "till" 등에 관한 용어는 종전과 동일하지만 "from"이란 용어는 종래에는 당해일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에는 "after"와 마찬가지로 당해일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⁹¹⁾.

그러나 統一規則上에는 "by", "before"라는 용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용어의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信用狀의 讓渡

1) 信用狀 讓渡 要請權者

신용장의 讓渡를 은행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는 물론 신용장을 사용권자인受益者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統一規則上에 再讓渡에 대한 제한 규정⁹²⁾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예매취역 여러번 讓渡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번 개정에는 讓渡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최초의 受益者 (first beneficiary)로 한정하므로써 1회에 한하여 讓渡할 수 있고 再讓渡⁹³⁾는 할 수 없도록⁹⁴⁾ 명확히 하였다(제46조 a항 i).

2) 讓渡可能 表示

종래에 讓渡可能 여부를 표시하는 용어에 대한 불명확성을 개선하여 개념을 좀더 명확하게 하였다. 즉 종래에는 "transferable" 이란 용어만을 讓渡可能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에 추가하여 "fractionable", "divisionable", "assignable",

91) 종래에는 환어음과 관련하여 from이란 용어가 사용될 경우 문제가 되어 이의 改正이 요구되었다. 즉 "30 days from sight"라고 표시된 경우 一覽日字를 포함하여 30일후에 支給하는 것으로 풀이되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1 days from sight"로 표시될 경우 一覽한 날자가 포함되므로 "sight day"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92) UCP 400 제54조 e항

93) 信用狀의 分割(fraction)讓渡는 再讓渡로 간주하지 않는다.

94) 信用狀 開設申請人의 입장에서 보면 讓渡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信用狀의 讓渡에 開設申請인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開設申請인이 기피하는 供給業者와 거래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開設申請인이 讓渡를 제한할 목적으로 讓受者の 人的事項을 開設申請人에게 통지하여 開設申請인의 허락을 받은 후에 讓渡를 할 수 있도록 信用狀의 조건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transmissible" 등과 같은 용어는 讓渡可能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애매하게 규정⁹⁵⁾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해석상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많았다⁹⁶⁾. 이번 개정에서는 "transferable" 이외의 용어를 사용한 경우 은행은 이를 무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讓渡可能與否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명확히 하였다.

3) 讓渡實行銀行의 制限

第1受益者の 요청에 따라 讓渡를 실행할 수 있는 은행(transferring bank)은, ④ 開設銀行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된 경우 開設銀行, ④ 確認信用狀의 경우 確認銀行 또는 開設銀行, ④ 지급, 인수, 매입이 指定된 경우 指定銀行 또는 開設銀行, ④ 自由買入信用狀의 경우 信用狀上에 指定된 은행⁹⁷⁾(specifically named in the credit) 또는 開設銀行 등으로 한정하였다(제46조 a항 iii).

따라서 受益者は 通知銀行이나 기타 受益者が 임의로 指定하는 은행⁹⁸⁾에 讓渡의 실행을 요청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2의 受益者에게 신용장이 讓渡된 후 타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讓渡를 실행한 은행은 조건변경 또는 기타의 전달사항(communications)은 반드시 서비스를 이용한 은행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제46조 a항 iii).

4) 信用狀의 讓渡

確認信用狀을 讓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確認銀行이 讓渡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讓渡를 할 수 있다. 만약 受益者が 開設銀行에 讓渡를 요청한 경우 開設銀行은 確認銀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⁹⁹⁾. 確認銀行이 讓渡를 동의할 경우 確認銀行의 확인은 제2의

95) UCP 400, 제54조 b항

96) Terms such as "divisionable", "fractionable", "assignable" and "transmissible" add nothing to the meaning of the term "transferable" and shall not be used.

97) 自由買入信用狀의 경우 어느 銀行에서나 讓渡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統一規則 제10조 b항(-- allows for negotiation by any bank(Nominated Bank), --)을援用하면 自由買入信用狀에서는 受益者が 지정하는 銀行이 바로 指定銀行이 되기 때문이다.

98) 自由買入信用狀은 제외된다.

99) 確認이란 기존의 債務가 그대로 존속한 채 確認銀行에게 새로운 채무가 獨立的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開設銀行에 대한 確認銀行의 與信行為의 일종이 되기 때문이다.

受益者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되며 (The confirming bank may give its consent, in which case its confirmation also applies to the second beneficiary.) 確認銀行이 동의를 거절할 경우 확인의 효력¹⁰⁰⁾은 무효가 된다.

한편 受益者가 開設銀行에 직접 讓渡를 요청하면 開設銀行은 確認銀行 또는 指定銀行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46조 b항 i).

5) 第1受益者의 權利

第1受益者が 신용장을 讓渡함에 있어서 추후에 신용장이 조건변경될 경우 그러한 조건변경을 제2의 受益者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¹⁰¹⁾(if he retains the right to refuse to allow the transferring bank to advise amendments to the second beneficiary.)에는 第1受益者は 그러한 사실을 讓渡實行銀行에 명백히(irrevocably) 지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讓渡를 실행한 경우 讓渡實行銀行은 제2의 受益者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 讓渡된 信用狀의 條件變更

신용장이 두명 이상의 제2의 受益者에게 讓渡된 후 조건변경이 될 경우 제2의 受益者 중 어느 한명이 조건변경된 내용을 수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제2의 受益者가 그러한 조건변경을 수락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refusal of an amendment by one or more second beneficiary does not invalidate the acceptance by other second beneficiary --).

또한 제2의 受益者가 조건변경 내용을 거절할 경우(-- second beneficiary who rejected the amendment, --) 동 신용장은 조건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the credit will remain unamended.)¹⁰²⁾.

100) 確認을 일종의 立存의 債務의 引受로 간주하는 시각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崔鳳赫, 前揭 博士學位請求論文 p.76 參照

101) 信用狀의 全部 讓渡인 경우에는 條件邊境을 제2의 受益者에게 통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서는 안된다.

102) 信用狀이 分割 讓渡되는 경우 각각의 讓渡는 별개의 獨립된 行爲를 구성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IV 第5次 改正案의 問題點과 實務上의 有意事項

1. 保證信用狀과 관련된 문제

統一規則의 제규정이 保證信用狀에도 적용된다는 제1조에 불구하고 조문이 貨換信用狀 위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保證信用狀에 統一規則을 적용하기에는 적당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는 保證信用狀 대신에 保證狀(letter of guarantee)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각종 건설공사나 대형 플랜트에 외국회사가 참여하여 保證狀 대신에 保證信用狀을 제시할 경우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에서 신용장을 개설함에 있어서 開設銀行이 자신을 위해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保證信用狀의 특성¹⁰³⁾을 살리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保證信用狀에 대한 세부조항을 따로 삽입하던가 아니면 保證信用狀의 統一規則을 새로 제정하여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EDI書類에 관한 내용

統一規則 개정실무위원회에서는 컴퓨터, 정보통신 등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기업간 또는 국가간의 정보교환이 손쉽게 이루어 점에 따라 데이터의 교환이 전자방식에 의한 데이터 교환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Incoterms 1990에서 규정하고 있는 EDI message에 대한 내용을 統一規則에 삽입하느

103) 保證信用狀은 다음과 같은 점이 貨換信用狀과 상이하다.

첫째, 取消可能으로 개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둘째, 運送書類나 商業送狀 대신에 受益者의 환어음 또는 不履行 확인墅 만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셋째, 延支給이 이루어 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로 一覽拂로 지급된다.

넷째, 開設申請人의 지급에 대한 기대가 相反된다. 貨換信用狀의 경우 開設申請人은 開設銀行이 지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保證信用狀의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섯째, 保證信用狀은 銀行의 支給保證이 금지된 국가인 美國에서 주로 사용된다.

여섯째, 貨換信用狀의 경우 典型的인 서류의 제시가 요구되지만 保證信用狀의 경우 典型的인 서류의 제시가 없다.

나의 여부에 대해 개정실무위원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統一規則은 각국에서의 무역거래관행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 EDI message에 관한 조항을 어떤식으로 듣지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書類去來를 원칙으로 하는 信用狀 去來에 書類敘는 거래방식을 수용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EDI message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지 못하였다.

EDI message에 관한 조항이 統一規則에 삽입될 가능성에 당분간은 회박하기 때문에 信用狀 去來에서 EDI message방식을 이용할 경우 當事者간의 합의사항을 信用狀上에 상세히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¹⁰⁴⁾.

3. 他國에 所在한 本,支店은 각기 다른 銀行으로 간주한다는 條項

統一規則에서 은행의 本,支店을 각기 다른 법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용장을 운용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에는 制定法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統一規則上에 本,支店의 법적성질을 他 法人으로 간주한다고 해도 제정법에 우선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조항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 이에 대한 判例나 事例가 없기 때문에 統一規則과 商法이 서로 상충될 경우 法院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¹⁰⁵⁾.

4. 統一規則의 한글 번역

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에는 ICC의 國內委員會가 설치되어 있으나 ICC에서 제정한 각종 규칙 등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翻譯되어 발표된 예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統一規則의 번역에 대한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용장에 관한 전문가들을 翻譯委員으로 위촉하여 統一規則을 번역하도록 하므로써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또한 한글로 된 統一規則의 권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104) 그러나 EDI message에 대한 정확한 定義는 실무계에 널리 認知되어 있지 않은 설정이다.

105) 信用狀과 관련된 紛爭에서 法院은 대부분 統一規則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 편이다.

5. 支給約定에 관한 문제

① 支給約定과 消滅時期 -- 이번 개정에서 取消不能信用狀의 경우 은행의 支給確約(definite undertaking)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書類가 指定銀行 또는 開設銀行, 確認銀行에 제시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書類의 제시장소에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書類를 제시하게 되면 신용장의 사용이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신용장의 효력이 종료된 후에는 開設銀行, 確認銀行 또는 指定銀行이 受益者에게 償還請求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書類 제시은행에 관한 규정은 신용장의 본질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장 실무 관행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指定銀行이 지급, 인수, 매입하는 것은 일종의 與信行爲로 간주하는데 있다¹⁰⁶⁾. 따라서 指定銀行은 신용장의 종료시기가 언제이고 또 受益者에게 償還請求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 指定銀行은 오로지 자행이 지급한 금액이 開設銀行으로부터 償還되지 않을 경우 開設銀行에 항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受益者에게 이를 회수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신용장의 운용이 跛行的으로 흐르고 있다.

② 指定銀行이 명시되지 않은 신용장 -- 이번 개정에서 開設銀行, 確認銀行이 직접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확약과 타 은행이 행하도록 하는 지급확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指定銀行이 명시되지 않은 신용장의 경우 開設銀行, 確認銀行에 직접 지급, 인수, 매입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受益者は 신용장을 입수한 경우 동 신용장에 開設銀行, 確認銀行이 인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인수은행명이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引受信用狀에서 開設申請人이 인수도록 指定된 경우 -- 引受信用狀의 경우 開設銀行 또는 確認銀行이 인수하도록 하거나 또는 타 은행이 인수도록 指定되어야 한다.

106) 信用狀에 의한 書類 買入은 實買로 보지 않고 일종의 消費貸借로 보는 見解가 지배적이다.

종래에는 開設申請人이 인수토록 하는 방식이 統一規則上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開設申請人이 인수하는 방법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開設申請人이 인수하도록 指定되어 있는 신용장에서 開設申請人이 환어음을 인수를 거절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무상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買入信用狀의 경우 -- 買入信用狀의 경우 종래에는 開設銀行 이외의 자가 지급인이 되도록 환어음을 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그러한 조항이 삭제되어 환어음의 지급인에 대한 제한규정이 철폐되므로써 受益者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은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買入信用狀의 경우 타 은행에서 매입을 이행하지 않으면 開設銀行이 지급하겠다고 확약하고 있으나, 開設銀行이 직접 지급¹⁰⁷⁾하는 경우와는 달리 償還請求權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without recourse)이 누락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6. 條件變更書의 受諾

실무상 조건변경서를 수령하는 경우 주로 신용장업무에 능숙하지 못한 受益者의 신입사원 또는 여사원 등이 신용장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채 조건변경서의 引受證에 도장을 날인해 주고 通知銀行으로 부터 인수해 온다. 이러한 경우 受益者は 신용장 조건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조건변경서를 인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조건변경은 受益者が 이를 수락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受益者が 동의하지 않은 조건변경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일단 수락한 이상 수락의사를 취소하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107) 여기에서 買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支給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債務者가 자신의債務을 割引하는 것은 先支給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債務者의 割引에 관해서는 崔鳳赫,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어음割引에 관한 研究”, 韓國貿易學會 學術發表大會論文集, 1986.6. pp.159-160 참조

7. 買入의 定義

買入이란 買入銀行이 受益者에게 書類 또는 환어음을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買入銀行 이외의 은행이 신용장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受益者的 거래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 위하여 신용장 금액을 受益者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비록 동 은행이 受益者가 제시한 書類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가의 여부를 점검한다 하더라도 매입이라고 지칭할 수 없다.

실무 관행상 매입이 指定되지 않은 은행이 신용장의 書類를 점검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매입¹⁰⁸⁾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입이 아니라 단순히 受益者の 거래은행이 受益者에게 신용장 書類 또는 환어음을 담보로 하여 대출해 주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仲介銀行이 書類를 심사하여 書類 상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買入銀行이 재심사를 하여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買入銀行의 결정이 우선한다. 그러므로 仲介銀行의 매입행위는 매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또한 신용장 關係當事者를 구속¹⁰⁹⁾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유념하여야 한다. 受益者が 어떤 이유로 인하여 신용장의 금액 전액을 은행에 청구하지 못하고 일부는 미사용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신용장 금액의 일부를 남겨두고 환어음을 발행하거나 送狀을 발행하는 경우를 short draw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short drawing은 嚴密一致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신용장 조건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실무에서는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의 부족을 용인¹¹⁰⁾하므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紛爭의 소지를 일부 없앴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08) 실무에서는 이를 네고(nego)라고 부른다.

109) UCP 500, Article No.14, a의 拘束力を 말한다.

110) Incoterms에서 過不足容認을 3%로 하였을 경우 3%의 short drawing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Incoterms에서 5%의 過不足을 容認하게 되자 이번 改正에서 5%의 short drawing을 허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8. 指定銀行의 指定

統一規則111)에는 신용장의 사용은행을 指定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指定된 은행이 受益者에게 指定사실의 수락을 통보하지 않으면 비록 신용장 사용은행으로 指定되었다 하더라도 受益者가 제시하는 書類를 지급, 인수, 매입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指定된 은행이 아무런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가 受益者가 書類를 제시하는 시점에서 指定銀行으로써의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受益者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指定銀行으로 指定된 은행은 그러한 통지를 받으면 자체 없이 受益者에게 수락여부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112).

9. 書類의 審查基準

이번 개정에서 書類審查期間이 7영업일 이내로 한정되므로 開設銀行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확정되었다. 따라서 開設銀行이나 確認銀行은 書類를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受理하던가 아니면 클레임을 제기하던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로써 書類를 일방적으로 장기간 유보하던 開設銀行의 횡포에 일단 계동을 걸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유보기간에 대한 當事者間의 견해차이를 해소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仲介銀行이 書類를 인수한후 指定銀行에 書類를 재차 제시할 경우 仲介銀行은 3일간의 換價料를 받는다. 따라서 書類 점검기간은 3일간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관행과 統一規則間의 乖離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113).

開設銀行이 書類를 심사하기 위하여 7일간의 기간을享有할 수 있으므로 開設申請人

111) UCP 400에서는 제11조 c항, UCP 500에서는 제10조 c항에 규정되어 있다.

112) 이에 관해서는 崔鳳赫, “信用狀去來上 銀行의 指定과 解除에 관한 研究, 清州大學校 經營學論集 제8집, 1986, pp.211-215 參照

113) 3일간의 書類點檢期間에 同調하는 見解로는 姜甲善 譯, 貿易決濟論, 法文社, 1976, p.175, 美統一商法典 第15篇 p.112

이) 開設銀行에 대하여 信用狀 代金을 償還해야 하는 기간도 書類를 수취한 후 7일간의 恩惠日을 賦유할 수 있어야 한다¹¹⁴⁾. 따라서 開設申請人은 書類到着日(arrival notice)로부터 7일이내 까지는 10일간의 換價料와 신용장 금액만을 開設銀行에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개정된 統一規則이 시행되면 開設銀行이 7일간의 恩惠日을 허용할지의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 運送證券에 관한 事項

① 運送證券 發行者 -- 運送證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는 첫째, 海上運送, 複合運送의 경우에는 船長, 船主, 運送人 또는 대리인 둘째, 傳船運送의 경우에는 船長 또는 대리인 세째, 航空運送의 경우에는 航空運送人 또는 대리인 넷째, 도로, 철도,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는 運送人 또는 대리인 다섯째, 特使配達人の 경우에는 特使配達人 여섯째, 運送周旋人運送의 경우에는 운송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갖춘 運送周旋人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에 複合運送의 경우에는 受理가 허용되던 FIATA B/L도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信用狀上에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受理되지 않는다.

그러나 郵便受取證의 발행자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기 때문에 郵便受取證 또는 郵送證明書의 受理與否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開設銀行에 일임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郵便受取證이나 郵送證明書에 대한 指定된 양식이 없을 뿐 아니라 발행하는 書類도 대부분 한글로 작성되며, 책임있는 자의 서명 날인이 생략되기 때문에 국제거래에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점이 문제가 된다.

② 發行者の 署名 -- 運送證券은 발행자가 署名하거나 眞本임을 확인하여야 유효하다. 종래에는 발행자의 서명만을 인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발행자가 서명 이외의 방법으로 眞本임을 확인하는 경우 受理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서명 이외의 방법을 허용하므로써 船貨證券이 발행된 후 電子式으로 전송되는 방식 즉, EDI 방식에 의

114) 이에 관하여는 崔鳳赫, 博士學位 請求論文, 1990, pp.60-61 參照할 것.

한 무역거래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③ 換積에 관한 사항 -- 海上運送과 傭船運送을 제외하고는 單一 運送證券에 의하여 全 運送區間이 카바되는 경우 換積이 허용되며, 海上運送의 경우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화물이 운송될 경우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換積에 대한 기준이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¹⁵⁾. 다만 傭船運送의 경우 換積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信用狀上에서 換積을 허용하지 않는 한 換積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④ 期間經過 證券 -- 선적일자로 부터 21일이 경과된 船貨證券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受理가 거절된다. 이때 受益者가 期間經過 사항에 저촉되지 않기 위하여 船貨證券의 發행을 고의적으로 연장시킬 경우 發行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해도 좋으나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경우 發行일자와 선적일자 가운데 빠른 일자를 기준일로 정하여 期間經過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¹¹⁶⁾. 국가에 따라서는 船貨證券의 제시를 선적일자로부터 21일이 경과한 후에 제시토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일자를 指定하여야 紛爭을 예방할 수 있다.

⑤ 船績 船舶名의 표시 -- 船積船貨證券이 發行되는 경우에도 船舶名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 -- XXX vessel or sub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船舶會社에 sub라는 용어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면 선박이 출항한 후에 삭제하여 주기 때문에 船貨證券의 發행일자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⑥ 無故障 運送證券 --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信用狀上에 無故障 船貨證券의 범위를 명백하게 명시하지 않을 경우 상품이나 포장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附記條項이 있더라도 受理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도 초래될 우려가 있다. 제31조 b항은 受益者에게는 편리한 조항이 되지만 開設申請人에게는 無故障 船貨證券의 범위를 신용장 개설시마다 신용장에 명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開設申請人이 신용장을 개설할

115) 換積이 금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換積 도중에 화물에 損傷을 입을 우려가 있고 또한 換積을 하면서 養育된 화물이 예정된 船舶에 적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착이 遲延된다는데 있다.

116) 실무에서는 期間經過 船貨證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용어에 대한 공식적인 定意는 내려진 바 없으므로 사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때에는 이점에 염두에 두고 信用狀上에 과다한 明細를 삽입하려는 시도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信用狀去來에逆行하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1. 商業送狀에 관한 문제

商業送狀은 受益者가 開設申請人名義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신용장을 讓渡한 후 送狀代替權을 행사하고자 하는 受益者는 자신의 권리의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送狀代替權을 행사하고 싶으면 信用狀上에 third party invoice를 허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¹¹⁷⁾.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送狀代替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送狀代替를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문제가 되는 개정이라 할 수 있다.

商業送狀에서 5%의 short drawing을 허용하므로써 실무상 Short drawing¹¹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紛爭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신용장 금액을 명시할 때 "up to" 또는 "aggregate"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12. 有效日字 및 場所

有效日字는 信用狀上에 표시된 대로 준수하면 되지만 장소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指定場所가 명시되지 않으면 유효기간의 종료장소는 受益者가 소재하는 곳이 아니라 開設銀行이 소재하는 곳에서 종료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¹¹⁹⁾. 따라서 受益者는 書類가 유효기간내에 開設銀行에 제시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은행에 따라서는 書類提示期間을 書類發給日로 부터 21일이 경과한 후에 제시토록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¹²⁰⁾.

117) 運送證券은 送荷人이 受益者가 아닌 제3자 名義로의 발행 즉, third party 運送證券의 發行이 허용된다.

118) 東京銀行 編著, 外國為替の實務, 經濟法令研究會, 1989, p.101

119) 信用狀의 消滅時期에 관해서는 崔鳳赫, 前揭博士學位請求論文, pp.21-24 參照

또한 선적일자와 관련하여 prompt, as soon as possible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경우 종래에는 개설일자로 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 이를 무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용어가 사용된 경우 선적일자를 명시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고 開設申請人에게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요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또한 일자와 관련하여 by 또는 before가 사용된 경우, 실무상 "by"는 당해일자를 포함하여 "당해일자 까지"로, "before"는 당해일자를 포함하지 않고 "당해일자 전일 까지"로 간주하여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3. 信用狀의 讓渡

① 讓渡實行銀行 -- 이번 개정에서 信用狀 讓渡 實行銀行을 指定하므로써 受益者가 임의로 자신의 去來銀行이나 通知銀行에 讓渡를 요청하던 종래의 실무관행에 제동을 거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신용장을 讓渡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장의 사용방법이 어떤 종류로 指定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指定된 은행 또는 開設銀行에서 讓渡를 실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기면 신용장 조건 위반으로 지급을 거절당할 우려가 있다.

② 讓渡後의 條件變更 -- 신용장을 讓渡한 후 第1受益者에게 불리하게 조건변경되면 第1受益者は 이를 第2受益者에게 은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通知銀行과 讓渡銀行이 각기 다른 경우 조건변경은 通知銀行을 통하여 第1受益者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讓渡實行銀行은 변경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어 본의 아니게 第2受益者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제2의 受益者の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장의 讓渡는 指定銀行에서 실행하는 것 보다는 通知銀行에서 행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¹²¹⁾ 指定銀行에서 讓渡를 실행하도록 개정된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20) 이와 같이 서류 발급후 21일이 경과한 후에 제시토록 요구하는 이유는 代金支給을 잠시나마 猶豫시켜 資金負擔을 輕減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1) 이 경우는 주로 제1의 受益者에게 불리하도록 信用狀이 변경된 경우에 발생한다.

V. 結論

統一規則이 制定된 후 4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 졌다고는 하지만 統一規則에 대한 解釋은 여전히 각국마다 상이할 뿐 아니라 같은 국가내의 은행들 간에도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가 많다. 信用狀 去來에서 해석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의 國際標準慣行(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인 統一規則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當事者間에 크고 작은 紛爭이 계속 발생하였다. 信用狀 去來에서 紛爭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은 신용장이 當事者의 자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 있다. 어느 企業이던지 간에 信用狀 代金이 예정된 날자로 부터 단 하루라도 늦게 결제되면 倒産이라는 죄악의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장과 관련된 紛爭에 대해서는 필사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紛爭이 발생하면 그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고자 統一規則을 我田引受格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ICC Banking Commission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이를 바탕으로 紛爭에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각국의 관행, 판례 및 질의, 응답 등을 참작하여 統一規則의 개정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統一規則이 紛爭의 최종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去來 當事者は 신용장의 해석은 統一規則을 준용하되, 統一規則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法解釋의 일반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해결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第5次 改正 내용과 問題點 및 實務界에서 신용장을 운용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問題點과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第5次 改正 統一規則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問題點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去來 當事者は 紛爭이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은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信用狀 去來의 圓滑化에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統一規則의 개정이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信用狀 去來에 발생하는 모든 問題點에 대해 해답을 줄수 없다고¹²²⁾ 단언하던 Wheble씨의 충고를 명심하여야 한다.

< 參 考 文 獻 >

1. 村田溥積, 信用狀統一規則の 4次改正, 大阪商業大學 論集 제68卷
2. 小峯登, 1974年 信用狀統一規則(上), 外國為替貿易研究會, 1977
3. 小峯登, 舟木凌, "(下)", 1979
4. 伊澤孝平, 商業信用狀論, 有斐閣, 1958
5. 東京銀行 編著, 外國為替의 實務, 經濟法令研究會, 1988
6. James E. Byrne, The 1983 Revision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of Documentary Credits, Banking Law Journal Vol. 102, 1985
7. Bernard S. Whebl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71 Revision, Cornell Int'l Law Journal , Vol.4 No.2, 1971
8. Note, Revised International Rules for documentary Credit, Harvard Law Review, vol. 65, 1952
9. B.S. Whebl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74 Revision), Journal of Business Law, 1975 March
10. 崔鳳赫, “信用狀去來에 支給履行에 關한 研究”, 中央大學 博士學位請求論文, 1990
11. ___, “信用狀去來上 銀行의 指定과 解除에 關한 研究”, 經營學論集 제8輯, 清州大學校, 1986, 1
12. ___, “延支給信用狀去來에 있어서 支給履行에 關한 研究”, 貿易學會誌 제11輯, 1986, 2
13. ___,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어음割引에 關한 研究”, 學術發表大會論文集, 韓國貿易學會, 1986, 6

122) B.S. Whebl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74 Revision), JBL, 1975, March p.286